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

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민 불편,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(폐차) 일자 이전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,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7월 5일

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

◎ 다 음 ◎

- 공 고 기 간 : 2024. 7. 5. ~ 2024. 7. 29. (24일간)
- 공 고 대 상 : 붙임 참조
- 폐차 예정일 : 2024. 7. 24. 이후
- 차량보관장소 : 차량별 붙임참조
가. 마산폐차장(주) ☎055)232-8080
나.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 ☎055)232-6272
- 유 의 사 항
가.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(직권폐차) 됩니다.
나.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~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, 범칙금 미납시에는 동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다. 또한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자)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(☎055)220-444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